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47 발의연월일: 2021. 9. 30.

발 의 자:최인호·위성곤·송옥주

박상혁 · 김병욱 · 이원택

이학영 · 민홍철 · 이용호

전혜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. 6. 9. 현행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사가 재개되었으나, 국가 정보원 자료를 통해 최근 파악된 피해자 규모가 상당하고 4명의 조사 인력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 임.

이에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와 유 족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5항 신설, 제6조). 법률 제 호
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3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 중 "제17373호"를 "제0000호"로, "2020년 6월 9일을"을 "0000년 0월 0일을"로, "1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	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
	은 3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
	로 정한다.
<u>⑤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6조(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	제6조(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
간)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(법	간)
률 <u>제17373호</u> 부마민주항쟁 관	<u>শা০০০০ ই</u>
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	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	
행일인 <u>2020년 6월 9일을</u> 말한	<u>0000</u> 년 0월 0일을
다)부터 <u>1년</u> 이내에 부마민주	<u>3년</u>
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	
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	
여야 한다.	